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 안성 예방적 살처분 농가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1. 관련: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4577('21.1.31.)호,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141('21.1.28.)호, -2228('21.1.29.)호
2. '21.1.28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산란계 농가의 보호지역 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산란계 농가 1호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의사환축 발생 농장 소재 시·도 및 시·군·구(경기도)

○ 검출 농장에 대한 조치

- H5형 항원 검출 농장 및 역학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및 출입자·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관련 시·도, 시·군·구에 보고(통보)
-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의 해당 농가 출입(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이용된 차량 관할 소재 지자체에 즉시 통보
 - * 해당 지자체는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이 의사환축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방역감시과)로 통보

○ 차단방역 강화조치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최초 설정된 방역지역을 유지하고,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방역대 해제 시까지 이동제한 및 예찰 지속 실시
- AI 항원 검출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 *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닭 등) 간이진단키트 검사 / (오리·거위·기러기) 항원검사(PCR)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AI 항원 검출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료공장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 운송차량의 운전자석 발판, 차량 바퀴 및 머드가드 포함

□ 경기도 이외 지자체

- AI 항원 검출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닭 등) 간이진단키트 검사 / (오리·거위·기러기) 항원검사(PCR)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AI 항원 검출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료공장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 운송차량의 운전자석 발판, 차량 바퀴 및 머드가드 포함
- AI 항원 검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 관할 지자체는 '가금상하차반', '백신접종팀'이 의사환축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방역감시과)로 통보

□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의무 위반사항 정밀 조사
 - 역학조사 시 농장 사육환경·방역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자체에 이첩
 -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 결과를 우리 부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전방역 조치에 활용토록 조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AI 항원 검출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의 농장 밖 이동을 금지하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진입 제한
 - AI 항원 검출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기록 관리 철저
- AI 항원 검출 농장의 진입로 소독(생석회 살포 등)
- AI 항원 검출 농장 관할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나. 추가 방역강화 조치사항

□ 해당 지역(시·군·구) 관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기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대상: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 ※ 해당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서 발부

□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100수 미만 방사사육 등) 가금 수매·도태 적극 실시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보건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한국관광공사사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제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강호성 서기관 황성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전결 2021. 1. 31. 이기중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1. 31.) 접수
2349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